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 11. 3.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31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안 제13조)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기관명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어 조직 또는 예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

2) 중소기업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지원방식의 인정 범위를 출연 및 보조에서 계약방식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3)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 요청 후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전년도 지원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직전년도의 실적을 요청비율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실적을 받은 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하고자 함.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국무회의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기관 및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4449, Fax : 042-472-328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예산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제13조제2항 전단 중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를 “일부에 대해 출연하거나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전년도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년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제3항의 기술혁신 지원실적과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일  
부에 대해 출연하거나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  
-----  
-----  
-----  
-----.

③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전년도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년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3항의 기술혁신 지원실적과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449